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11월 17일(수)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3.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

2010년 11월 18일(목)

## 4. 개정근거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3  
조

## 5. 검토의견

0 본 조례안은 기존 위기가구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해 온 긴급 구호사업이 보건복지부, 서울시의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의 추가 시행으로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등 조례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“긴급구호비 지원”을 “특별생계비 지원”으로 하고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